

청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235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피고와 망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6,163,3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21. 7.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16,173,308원’은 ‘16,163,308원’의 오키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별지 채권내역 기재와 같이 망 B(2019. 8.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망인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망인은 2018. 11. 19. 시어머니인 피고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제○부동산’이라 하고,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800만 원, 채무자를 망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배당절차

1)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집행법원은 2021. 1. 19. 배당기일을 열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91,889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21가단20395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E(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집행법원은 2020. 8. 18. 배당기일을 열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8,616,320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20가단23854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각 경매절차의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망인의 재산상태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2019. 1.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나아가 실제로 원고가 2019. 8. 27. 망인의 채무를 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욱 심화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고,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원고는 제2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에서 원상회복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외에 원상회복을 별도로 명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의 배상가액을 보건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1. 8. 11. 현재 원고의 채권은 16,163,308원(= 원금 12,717,284원 + 대지급금 502,031원 + 미수추가보증료 117,620원 + 지연손해금 2,826,373원)이다.

따라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6,163,3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